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1일

다산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**	정** 1967-09-2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1길	거주불명등록 2019-11-11
윤**	윤** 1968-05-28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바길	거주불명등록 2019-11-11
오**	오** 1980-02-28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	거주불명등록 2019-11-11